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5/2563호

기반 경제 투자촉진 규정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종합 안내사항 제2/2557호 투자촉진 정책과 규율은 지방의 투자촉진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것이며 지방 정부의 부분적 지원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불교년 2520년 투자촉진법 16항, 18항, 31항에 의거하여 투자촉진위원회 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림

1. 2018년 12월 28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11/2561호 기반 경제 투자촉진 규정을 취소
2. 투자촉진을 요청할수있는 프로젝트의 권리와 혜택에 대한 요구조건은 기반 경제 투자촉진 규정을 따름

2.1 이미 진행을 하고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촉진을 받는 여부에 상관없이 따름

- (1) 이전과 같이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촉진위원회가 규정에 맞는 투자 요청을 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종류이거나 법인세 면제나 감면 혜택, 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로젝트여야 함
- (2) 투자촉진을 받지못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촉진위원회가 아래의 규정을 따르는 투자촉진위원회가 발표한 종류의 프로젝트 종류여야함

조건

- (1) 각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액이 1,000,000바트 이상(토지와 순환자본 제외)이어야 하며 지방 기관의 지원금액이 건당 200,000바트 이상 이어야함
- (2) 생산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기관과 협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며 투자촉진서가 발행된 이후, 3년 이내에 실행을 하고 끝마쳐야함
- (3) 투자촉진을 받는 지방 기관이란 지방의 관련기관에 등록을 한 협동조합이나 기업 공동체 또는 한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지방 관리기관으로 농업, 가공농업, 경공업, 지역관광업등이 해당

권리와 혜택

- (1) 법인세 면제혜택을 3년간 투자금의 120%(토지와 순환자본 제외)만큼 주며 투자금으로부터 법인세 면제를 계산하는 이전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되는 경우(토지와 순환자본 제외)에는 투자위원회에서 지정한 지방 기관에 실제로 지원금을 내는 해당되는 경우로 공장설

립비용, 기계와 장비비용,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등이 해당되며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는 기간은 투자촉진서를 받은 이후로부터 계산

- (2) 세금에 대한 권리와 혜택이 없는 경우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 사항 제 2/2557호의 규정을 따름

2.2 이전과 같은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을 받고있으며 아직 법인세 면제 혜택이 끝나지 않은 경우나 투자촉진을 요청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법인세 면제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받음

조건

- (1) 지방 기관에 대한 투자금액이 최소 200,000바트 이상이어야함
- (2) 생산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기관과 협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며 투자촉진서가 발행된 이후, 3년 이내에 실행을 하고 끝마쳐야함
- (3) 투자촉진을 받는 지방 기관이란 지방의 관련기관에 등록을 한 협동조합이나 기업 공동체 또는 한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지방 관리기관으로 농업, 가공농업, 경공업, 지역관광업등이 해당

권리와 혜택

한도액 법인세 추가 면제 혜택에 대해 투자금액의 120% 를 넘지 않는선(토지와 순환자본 제외)에서 받을수 있도록 하며 투자촉진위원회에서 지정한 지방 기관에 대한 실제 지원을 위한 투자금액의 가치에 대해 계산을 통해(토지와 순환자본 제외) 결정을 하며 공장 설립 비용, 기계와 장비 비용,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등이 해당

3. 규정을 따라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다른 규정에 맞는 권리와 혜택을 요청할수 있음
4. 2021년의 마지막 날까지 투자촉진요청을 해야함

2020년 2월 6일부터 적용

2020년 3월 11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